

	대학윤리행동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4. 3. 21.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학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이 규정에서 구성원이라 함은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의미한다.

제2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제4조(기본윤리) ① 모든 구성원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 구성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유지·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성원은 대학에서 활동 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 한다.

제5조(사명완수) 구성원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비전 실현에 노력하며, 맡은 바 책임을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완수한다.

제6조(이해충돌의 회피) ①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학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대학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대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의 직무수행) ① 교직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수수의 금지)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①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③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회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교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지 않는다.

제9조(상호존중) ①교직원은 직종, 직급에 관계없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②교직원은 학벌·성별·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직원 상호간에는 비방,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사의 구분) ①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은 대학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학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교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대학 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직원은 총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학생존중) ①교직원은 국적, 인종, 성, 빈부, 출신지역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②교직원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차별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나 법에 규정된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직원은 학생이 대학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학생의 만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공정한 대우) 대학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교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3조(안전 및 위험예방) 대학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금지) 구성원은 정당·정치인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5조(환경보호) 대학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대학 구성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3장 구성원의 행동강령

제17조(교직원 행동강령)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은 학칙을 준수하며, 교직원으로서 책무를 다 한다.
2. 교직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며, 차별하지 않는다.
3. 교직원은 종교, 사상, 문화, 인종, 장애 등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4. 교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배제하며, 공익을 추구한다.
5. 교직원은 양심과 품위를 지키며, 대학의 명예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18조(학생 행동강령) 학생은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실천하여야 한다.

1.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수행 등 학생으로서의 책무를 다 한다.
2. 학생은 교직원을 존중하고 예의와 품위를 지킨다.
3. 학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종교, 사상, 문화,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4. 학생은 학업수행 과정에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학생은 목포과학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의 대학윤리규정은 2014. 3. 20일부로 폐지한다.

【 윤리강령 】

1. 교직원 윤리 행동강령

- 1) 교직원은 학칙을 준수하며, 교직원으로서 책무를 다 한다.
- 2) 교직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가르친다.
- 3) 교직원은 종교, 사상, 문화, 인종, 장애 등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4) 교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배제하며, 공익을 추구한다.
- 5) 교직원은 양심과 품위를 지키며, 대학의 명예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학생 윤리 행동강령

- 1)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수행 등 학생으로서의 책무를 다 한다.
- 2) 학생은 교직원을 존중하고 예의와 품위를 지킨다.
- 3) 학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종교, 사상, 문화,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4) 학생은 학업수행 과정에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학생은 목포과학대학교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 한다.

【 대학헌장 】

목포과학대학교는 산업발전과 국민보건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일을 사명으로 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교육과 연구에 반영하며, 학문적 노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 한다. 올바르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전문 기술인을 키우기 위해 노력 한다.

목포과학대학교는 세계화, 정보화로 요약되는 새 시대의 정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구성원들은 부단한 자기개발과 인격도야에 진력함으로써 이 시대에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 한다.